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320 |
|----------|-----|

2011년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년 5월 12일, 정승우 의원외 20명
- 나. 회부일자 : 2011년 5월 16일
-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 6월 28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서강석)

가. 제안 이유

서울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 등의 계약시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원가분석 등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가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에 근거를 두고 기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가. "원가분석자문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함(안 제12조의2).
- 나. 원가분석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되도록 함(안제12조의2).
- 다.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자료공개 의무를 명시함(안 제13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대상 : 규제심사 대상사무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용훈)

가.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근거 명시(안 제12조의2)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참조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p> <p>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p>제 1 2 조 의 2 (원 가 분 석 자 문 회 의) ① 제 2 조 에 따 른 위 원 회 의 심 의 대 상 계 약 에 대 한 적 정 한 원 가 분 석 에 의 거 한 사 업 비 의 합 리 적 산 정 을 위 하 여 다 음 각 호 의 사 항 에 대 한 자 문 을 담 당 하 는 서 울 특 별 시 원 가 분 석 자 문 회 의 (이 하 " 자 문 회 의 " 라 한 다) 를 설 치 · 운 영 할 수 있 다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원가대상별 원가와 계산가격의 산정의 적정성 검토 4. 용역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이하 '규칙)」에 근거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조례상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입법의 타당성이 있음.
- 계약심사제도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접목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바(2003년), 계약심사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가분석자문단』을 구성·운영(2005년 12월 28일)하여 현재의 자문회의에 이르고 있음.
- 자문회의는 발의된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결·결정보다는 개인의 전문적 지식을 원가분석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최적의 원가분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공무원을 제외한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음.

▶ 방침에 따른 구성원 자격기준

- 건설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건설관련 분야에서 5년이상 원가산출·분석 연구 종사자
- 기타 건설관련 설계·시공·감리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개정안에 따르면 자문회의의 자문대상을 규칙보다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문회의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명시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여건상의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임.

나.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안 제12조의2제2항)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 참조 「서울특별시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② 자문회의 는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재무국장이 된다</p> | <p style="text-align: center;"><u>제 1 2 조 의 2 (원 가 분 석 자 문 회 의)</u>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 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p> |

- 개정조례안은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의장은 재무국장이 되도록 명시하여 현행 규칙과 구성 방식이 동일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에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였음.
- ※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상위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인사·조직편성권을 지나치게 제약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나, 서울시민의 정치 대표기관이라는 위상을 고려할 때 의장의 추천권 행사는 시장에게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또한 재무국장이 자문을 구하는 회의체의 의장직을 재무국장이 맡도록 하는 것이 자문회의의 성격상 적절한지의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 · 계약심의위원회는 재무국 산하 재무과 계약1팀의 소관업무대상이고, 원가분석자문회의를 비롯한 원가심사 등의 업무는 계약심사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회의는 그 성격상 독립적 업무 집행이 요망되는 감사(監査)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영역이라고 판단되는 바, 재무국장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원가분석자문회의의 의장 지위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계약심사과와 재무과 계약팀의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현재의 조직체계의 타당성 및 합리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의회의 자료요구권 명시(안 제13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생략)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전항과 전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u> |

-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 계약심의위원회와 원가분석자문회의 회의록 제출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

일시 2010년 11월 16일(화) 오전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정승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황한 부분이 있어요. 2006년도 7월부터 계약심의위원회 활동내역과 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요구자료 2-2 책자의 12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활동내역 따로 붙임, 위원회 명단 따로 붙임, 회의록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집약되어 결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개진한 위원에 대하여 집단행동 등을 할 개연성이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 **재무국장 정윤택** 위원회에 논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원칙적으로 지금 제출은, 열람은 저희가 사실…….

○ **정승우** 위원 어떤 관련법규에 의해서 그러니까?
○ **재무국장 정윤택**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정승우** 위원 정확한 법적근거를 대시라고요. 제가 인사말씀 서두에 열린 행정을 구현해 달라는 취지가 바로 이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중략) …

○ **재무국장 정윤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정승우**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적기준을 정확히 대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국장님의 방침입니까? 방침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어떤 근거에서 계약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없는 것인지.
○ **재무국장 정윤택** 제가 지금 당장에 법적근거는 찾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 **정승우** 위원 담당과장님, 법적근거 모르십니까?
○ **재무국장 정윤택** 이것을 제가 보고 관행으로…….
… (중략) …

○ **정승우**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도 다 됐지만 이 자료를 정당한 법적근거를 대지 않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져오지 않으면 감사를 제가 중지를 하겠습니다.
… (중략) …

○ **재무국장 정윤택** 저희가 관련법조문을 찾아봤습니다. 법조문에 일부 그런 뉘앙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정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한 재무행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위원들의 명을 익명처리한 후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의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30명 중 2명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의 시정에 대한 독단적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판단됨.

(답변) 지방의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의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대법원 판례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람.

6. 토론 요지 : 없 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현행과 같이 함(안 제2조).
-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안 제1호는 제2호로, 안 제2호는 제3호로, 안 제5호는 제4호로 수정하고, 제1호는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안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함(안 제12조의2).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9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32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28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법령상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조문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는 현행과 같이 함(안 제2조).
-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안 제1호는 제2호로, 안 제2호는 제3호로, 안 제5호는 제4호로 수정하고, 제1호는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로 하고, 안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함(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는 현행과 같이 한다.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안 제1호는 제2호로, 안 제2호는 제3호로, 안 제5호는 제4호로 수정하고, 제1호를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로 하며, 안 제3호 및 제4호는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및 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가대상”이라 함은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어떤 사업·부문·제품·활동 등을 말한다. 2. “용역원가”라 함은 학술적 전문지식, 과학기술 기타 무형의 서비스를 응용하여 행하는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감지(感知)·평가·자문·지도 및 교육훈련, 기술적 타당성 검토,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기술교범(技術教範) 작성 등의 용역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계산가격”이란 총원가에 이윤과 투자자본보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p>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제></p> |

<신설>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절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원가대상별 원가와 계산가격의 산정의 적정성 검토
 4. 용역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생략)

<신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과 전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개정안과 같음)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삭제>

<삭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제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항과 전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 <u>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
| <p><신설></p> | <p>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p> <p>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p> |

| | |
|--|---|
| <p>제 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생략)</p> <p><신설></p> | <p>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 13조(비밀유지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전항과 전전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p> |
|--|---|